#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46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 한정애·추미애·이병진

박희승 · 홍기원 · 김기표

주철현 • 조인철 • 김동아

정일영 • 박선원 • 문진석

이학영 · 송옥주 · 강준혁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빗물의 활용 등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체·보조 수자원 시설의 개발이나 관리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기존 수자원시설과의 연계관리가 어렵고, 대체수자원의 개발은 댐이나 상수도보다 경제성이 낮아 미래세대를 위한 수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이용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자

원시설과 대체·보조 수자원 시설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 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 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 법률 제 호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유수 저류 및 활용
- 5. 용수 및 하수의 재이용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수자원시설과 대체·보조 수자원 시설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대체·보조 수자원의 개	제23조(대체·보조 수자원의 개		
발·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	발·활용) ①		
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用			
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4. 유수 저류 및 활용</u>		
<u>&lt;신 설&gt;</u>	<u>5. 용수 및 하수의 재이용</u>		
<u>4.</u> (생 략)	<u>6.</u>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		
	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		
	•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④ 국가는 수자원시설과 대체		
	・보조 수자원 시설의 연계관		
	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③ (생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		